

되는 자료들을 DB화시킴으로써 공동활용하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관련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건물관련세목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행정망자료와 연계된 것은 자동차세, 주민세(균등할)가 있으며, 면허와 관련된 세목은 면허세이다. 국세와 관련된 지방세목(소득세, 법인세)으로는 주민세(법인 및 개인사업자 소득할, 법인 균등할)가 있다. 원천징수하는 것은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주민세(소득할)가 있다. 이처럼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는 세목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일한 자료를 DB화시킴으로써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모형을 그리면 <그림 2>와 같다.

IV. 세법상 전자우편신고제도

지방세정의 전산화가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 세법에 반영된 것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전자우편신고제도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1. 전자우편신고제도의 도입 내용

① 개념(법제2조18호)

전자우편신고제도라함은 신고관련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후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신고에는 전화신고를 포함한다.(2001.7.1적용)

② 신고일(법제5조의2)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기록된 때를 신고일로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특례(법제5조, 영제2조)

신고기한일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한다.

④ 과세표준신고의 관할(법제43조)